

수원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1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835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김웅

변론 종결2020. 11. 19.

판결 선고2021. 1. 14.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835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614,110,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4,110,9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3쪽 5~6행의 "그 무렵 ~ 자기앞수표를"을 "원고는 그 무렵 그중 액면 합계 16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위 1)항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C, K, L이 이를"으로 고친다.

○ 4쪽 10~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와 C는 2016. 10. 7.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평택시 U 대 430m² 중 75.81/658 지분, V 대 21m² 중 75.81/658 지분, W 대 7m² 중 1/2 지분,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m², Z 임야 298m²(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평택시 U 대 430㎡ 중 75.81/658 지분, V 대 21㎡ 중 75.81/658 지분, W 대 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에,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 Z 임야 298㎡에 관하여 2016. 11. 8.에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4쪽 아래에서 4~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5쪽 5~8행의 "최소하고 ~ 있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614,110,9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15,110,900원 - 이 사건 건물의 우선변제권 있는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4,11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4행의 "2012. 1. 22."을 "2012. 2. 21."로 고친다.

○ 6쪽 11행부터 7쪽 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

(1) 갑 제4, 6 내지 8, 14 내지 16호증, 을 제13, 28, 29,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이하 '재산목록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1,470,712,946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593,275,320
2	평택시 U 대 430㎡ 중 75.81/658 지분	59,647,953
3	평택시 V 대 21㎡ 중 75.81/658 지분	9,781,909
4	평택시 W 대 7㎡ 중 1/2 지분	13,807,500
5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	480,000,000
6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 m ²	26,262,924
7	경북 의성군 Y 임야 145m ²	83,665
8	경북 의성군 Z 임야 298m ²	170,456
9	예금 채권(주식회사 AC3) 이하 'AC은행'이라고만 한다. AF 계좌)	790
10	예금 채권(AC은행 AG 계좌)	4,412
11	예금 채권(AC은행 AH 계좌)	47,000,000
12	예금 채권(AC은행 AI 계좌)	100,000,000
13	예금 채권(AC은행 AJ 계좌)	100,000,000
14	예탁금 채권(AK AL 계좌)	40,678,017

1	이 사건 각 부동산	593,275,320
합계	1,470,712,946	

(2)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가) AM Honolulu, AN(이하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이라 한다)

갑 제17호증, 을 제28,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가 2015. 3. 12.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미화 500,000달러에 매수한 이후 C의 권리 양도 등으로 인하여 2016. 1.

5.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C 등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4. 12. 24.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미화

721,888달러를 C 등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C가 미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도 여전히

미국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등 그 존재를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형태의 재산으로

현존하여 C가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돈 중 미화 500,000달러는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의 매입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의 부동산 매매대금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가 2014. 12. 12. AO에게 피고와

C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AP, AQ에 있는 AR아파트 AS호를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2억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AO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C가 2015. 12. 31. 주식회사 AT에 C 소유인

평택시 AU 대 16m²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6,77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C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급받은 각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도 앞서 인정된 예금 및 예탁금 채권 등의

C의 적극재산 이외에, 별도로 그 존재를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형태의 재산으로 현존하여 C가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라) C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에 대한 2013. 9. 30.자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을 제22, 29,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가 2013. 9. 30. AV에 4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V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AW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근저당권자인 C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X)에서 C가 2016. 2. 25. 246,853,184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도 앞서 인정된 예금 및 예탁금 채권 등의 C의 적극재산 이외에, 별도로 그 존재를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으로 현존하여 C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등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점,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가적인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① C가 AV로부터 이 사건 대 부연대보증인인 AY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채권 부분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마) C의 E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가 원고와 사이의 2011. 12. 23.자 및 2012. 2. 21.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E, AZ, Q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채무자, 금액 등이 전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E, AZ, Q 등에게 그 변제 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C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또한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소극재산

C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91,997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	1,749,091,997(원) 원금 16억 원과 2014. 11. 27.부터 2016. 10. 7.까지 사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49,091,997원(= 16억 원 × 0.05 × 400일/365일 + 16억 원 × 0.05 × 281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다.
2	A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0,000,000
3	이 사건 건물의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
합계	2,000,091,997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7쪽 9행의 "C와" 앞에 "그 자녀인 O에 대한 양육비 등을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 8쪽 아래에서 6행부터 12쪽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 적극재산

① C의 재산목록 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 예금 및 예탁금 채권 및 피고의 이 사건 해외 부동산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 6, 7, 14, 17호증, 을 제3, 4, 15, 28, 30, 31,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1985. 9. 30. C와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C가 결혼 이후 BA은행, BB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피고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사를 전담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2001. 3. 1.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BC교회에서 전도사로, 2011. 3. 2.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BD교회에서 목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도 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부분 각 재산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거나 상속받은 C 또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거나 그 특유재산으로부터 비롯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 재산목록 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은 C가 피고와 결혼한 이후 약 26년 이상 지난 2011. 11. 15.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은 C와 피고가 2015. 3. 12. 공동으로 매수한 이래 C의 권리 양도 등으로 2016. 1. 5.부터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인데, C와 피고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과 AC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등을 매입 자금으로 하여 이 부분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은 예금 및 예탁금 채권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각 재산은 부부였던 피고와 C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협의이혼 당시 이 부분 각 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의 적극재산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	480,000,000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m ²	26,262,924	
경북 의성군 Y 임야 145m ²	83,665	
경북 의성군 Z 임야 298m ²	170,456	
예금 채권(AC은행 AG 계좌)	130,694,110	
예금 채권(AC은행 BE 계좌)	1,425,503	
예금 채권(AC은행 BF 계좌)	20,000,000	

C의 적극재산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	480,000,000
예금 채권(AC은행 BG 계좌)	27,000,000	
예탁금 채권(AK AL 계좌)	60,295,129	
피고의 적극재산	이 사건 해외 부동산	561,250,000

② 재산목록 표 순번 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C는 2012. 2.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22.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 피고는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4. 12.경부터 미국 하와이주에서 거주하여 왔고 2015. 9.경에는 C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호협93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 2016. 2. 10. 이혼신고를 마치고도 한 점, ㉢ C가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때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이 부분 각 부동산의 유지 내지 감소 방지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 이 부분 각 부동산 이외에도 이미 피고와 C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다른 부동산 등의 부부 공동재산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각 부동산은 C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대여금 채권

C가 2013. 9.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피고와 C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C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34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C가 2011. 12. 23.자 및 2012. 2. 21.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17억 원 중 합계 13억

원은 그 당시 C가 G조합 등 금융기관과 K로부터 새롭게 차용한 것이고, 합계 4억 원은 C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AC은행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였던 점, ㉔ 액면 합계 4억 원의 위 자기앞수표가 C의 특유재산이라거나 그 특유재산으로부터 비롯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①항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또한 피고와 C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보이는 점, ㉕ 결국 C가 취득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위 4억 원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와 C의 부부 공동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위 4억 원과 관련된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㉖ C 등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4. 12. 24.부터 2015. 10. 29.까지 사이에 미화 701,888달러를 C 등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C가 미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와 C의 협의이혼 당시에도 앞서 인정된 이 사건 해외 부동산 등 적극재산 이외에 미국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의 재산으로 현존하여 C 또는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돈 중 미화 500,000달러는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의 매입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㉗ 이 사건 매매대금 및 피고가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C가 2014년경 내지 2015년경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1. 9. 28. BH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B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H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B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 및 피고가 반환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이 협의이혼 당시에도 앞서 인정된 적극재산 이외에 별도의 재산으로 현존하여 C 또는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

위 적극재산 ④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부부 중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경우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 C가 2011. 12. 23.자 및 2012. 2. 21.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6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와 C의 부부 공동재산인 4억 원 및 그 부부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C가 새롭게 조달한 13억 원과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그중 위 13억 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와 C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볼 수 없는 점, ㉢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4/17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피고와 C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의 협의이혼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399,207,760\text{원} [= 1,696,632,980\text{원} \{16\text{억 원} + 2014. 11. 27.\text{부터 } 2016. 2. 10.\text{까지 사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 96,632,980\text{원} (= 16\text{억 원} \times 0.05 \times 400\text{일}/365\text{일} + 16\text{억 원} \times 0.05 \times 41\text{일}/366\text{일})\} \times 4/17]$ 부분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A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C가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가 피고와 C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2015. 5. 20.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C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협의이혼 당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의 A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이 2억 5,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의 AC은행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와 C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당한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적극재산 ①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재산분할 비율을 C 50%, 피고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당한 재산분할의 방법

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재산분할 대상인 부분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님에도 이를 전부 C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C로부터 그 채권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C의 변제 자력을 감소시켜 원고 등 C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를 상당한 방법의 재산분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C가 피고에게 그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역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C가 피고에게 그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타당하다.

③ 나머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위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재산분할 대상의 순자산액 904,827,211원의 50%에 해당하는 452,413,605원(= 904,827,211원 × 0.5)을 초과하는 561,2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C에게 그 차액인 108,836,395원(= 561,250,000원 - 452,413,605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C의 적극재산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	480,000,000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m ²	26,262,924	
경북 의성군 Y 임야 145m ²	83,665	
경북 의성군 Z 임야 298m ²	170,456	
예금 채권(AC은행 AG 계좌)	130,694,110	
예금 채권(AC은행 BE 계좌)	1,425,503	

C의 적극재산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	480,000,000
예금 채권(AC은행 BF 계좌)	20,000,000	
예금 채권(AC은행 BG 계좌)	27,000,000	
예탁금 채권(AK AL 계좌)	60,295,129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배당금 부분	246,853,184	
피고의 적극재산 합계(A)	이 사건 해외 부동산	561,250,000
합계(A)	1,554,034,971	
C의 소극재산 합계(B)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399,207,760
A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0,000,000	
합계(B)	649,207,760	
순자산 (A-B)	904,827,211	

한편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호협932)에서 그 자녀인 O(P생)의 양육비에 관하여 C가 피고에게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O가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져 2015. 12. 24. 그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점, ② 이에 따라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그 총액이 분할 지급금의 합계인 83,354,838원(= 200만 원 × 41개월 + 200만 원 × 21일/31일)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인 점, ③ C가 협의이혼 신고 이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시까지 피고에게 위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C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가 그 양육비의 일괄 지급까지 포함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은 피고가 C에게 25,481,557원(= 108,836,395원 - 83,354,838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이다.

(3)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C가 피고에게 그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재산분할 대상의 1/2 부분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1/2 부분을 각각 양도하고, 피고가 C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C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 12쪽 8행의 "보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6. 26.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6.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그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C로서는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C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실제로 인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14쪽 3행의 "2018. 11. 20.자"를 "각"으로 고친다.

○ 14쪽 4행의 "성명불상자와"를 "BK과"로, 7행의 "성명불상자가"를 "BK이"로 각각 고친다.

○ 14쪽 8행의 "재산분할약정은" 다음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 14쪽 10행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를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로 고친다.

○ 14쪽 아래에서 10행의 "인정한 ~ 2016. 10. 7."을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6) , 2018. 12. 24."로 고친다.

○ 14쪽 아래에서 6행의 "된다"를 "되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수액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 최규홍

판사 장윤식

판사 전용수

별지

1) 원고는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의 내용과 변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14,110,9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614,110,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재산분할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5번 기재 부동산은 2016.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2. 2.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거래가액이 4억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C의 협의이혼일(2016. 2. 10.) 또는 이 사건 처분행위일(2016. 10. 7.) 이후 2016. 10. 21.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의 가액이 증감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협의이혼일 또는 이 사건 처분행위일의 위 부동산의 가액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본다. 순번 2, 3, 4, 6, 7, 8번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6. 1. 1. 기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였다.

3) 이하 'AC은행'이라고만 한다.

4) 원금 16억 원과 2014. 11. 27.부터 2016. 10. 7.까지 사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49,091,997원(= 16억 원 × 0.05 × 400일/365일 + 16억 원 × 0.05 × 281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다.

5) 각 토지의 가액은 2016. 1. 1. 기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의 2015. 3. 12. 당시 거래가격은 미화 500,000달러(561,250,000원 = 미화 500,000달러 × 2015. 3. 12. 기준 환율인 1,122.5원/달러)이고, 그 때부터 위 협의이혼 당시까지 그 가액이 증감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협의이혼 당시의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의 가액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본다.

6) 원고가 2018.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9.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10. 7. 기준 시가가 593,275,320원이고, 2018. 12. 24. 기준 시가가 615,110,900원이다."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